“코로나19” 관련 수출입 물류 동향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2020. 9. 17(수)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추가로 필요한 물류 동향 정보 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수출입 물류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jn9900@korea.kr, 044-203-4022)
②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kscn@kita.net, 02-6000-5339)

※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799042&indexArray=&sortArray=&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mmCode1=&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EC%BB%A8%EC%84%A4%ED%8C%85

1 해외 현지 물류동향 정보 제공 웹사이트

구 분			URL
전 세계	해운	해운 동향 (자료:wilhelmsen)	https://www.wilhelmsen.com/ships-agency/campaigns/coronavirus/coronavirus-map/
	항공	항공사별 동향 (자료:IATA)	https://www.tact-online.org/covid-19
		공항별 운항실적 및 동향 (자료:ICAO)	https://www.icao.int/safety/Pages/COVID-19-Airport-Status.aspx
	육상	국경통제조치 현황 (자료:UNECE)	https://wiki.unece.org/display/CTRBSBC/Observatory+on+Border+Crossings+Status+due+to+COVID-19+Home
	기타	관세/통관 관련 조치 현황 (자료:WCO) ※ Temporary import support (또는 export control) measures adopted by Members 참고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activities-and-programmes/natural-disaster/coronavirus.aspx
		무역 관련 조치 현황 (자료:WTO) ※ 웹페이지 중~하단의 ‘COVID-19: Trade and trade-related measures’ 참조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ovid19_e/covid19_e.htm
		전세계 확진자 수 현황 (자료:존스홉킨스 대학)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유럽	물류	국경 간 트럭운송 소요시간 동향 (자료:sixfold)	https://covid-19.sixfold.com/
		국가별 물류 관련 동향 (자료: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ort/coronavirus-response_en
		국가별 물류 관련 동향 (자료 : OECD ITF)	https://www.itf-oecd.org/road-transport-group/covid-19-road-group
		국가별 물류 관련 동향 (자료 : EU 화주협의회)	https://europeanshippers.eu/download/overview-of-measures-per-country-in-response-to-covid-19/
미주	물류	트럭운송 관련 연방대응 및 지침, 규제, FAQ (자료 :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	https://www.trucking.org/COVID19
	기타	미국/캐나다/멕시코 실시간 국경 통과 시간 (자료: 미국관세국경보호청)	https://bwt.cbp.gov/

1-1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grp

- 지역별/키워드별 정부지원책을 종합하여 조회 가능

2 코로나19 주요 교역국가별 현지 동향 (자료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9/11 기준)

□ EU 현지 현황

1. EU 집행위 동향

○ (집행위) 역내 이동제한의 조화를 위한 제안 발표(9.4)

- 최근 유럽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각 국별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역내국경 통제가 다시 도입되고 있어, 공통되고 조화로운 제한조치를 위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를 제안

- 공통기준: ①14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감염자수**, ②7일간 감염테스트 중 **양성판정 비율** ③7일간 인구 **10만명당 감염테스트 수** 등 3개 기준 적용

- 공동색상코드: 유럽감염병 예방 및 통제센터(ECDC)는 상기 정보를 바탕으로 녹색, 오렌지, 적색, 회색 4개 색상 지도 제작 및 매주 업데이트

- **녹색**: 감염자수 25명 미만 and 양성판정비율 3% 미만 → 이동 미제한
- **오렌지**: 감염자수 50명 미만 but 양성판정비율 3% 이상, 또는 감염자수 25-100명 but 양성판정비율 3% 이하
- **적색**: 감염자수 50명 이상 and 양성판정비율 3% 이상, 또는 감염자수 150명 이상
- **회색**: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없는 지역, 또는 감염테스트 수가 250명 미만

- 적색 또는 회색지역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도착후 감염테스트 권고, 다만 다른 EU 회원국에서의 입국을 거부하지 말 것

- 관련 정보는 Re-open EU 웹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2. EU 주요국가별 동향

ㅇ (스위스) 로쉬社 생산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미국 FDA 사전테스트 승인 등

- 코로나 감염여부를 15분만에 확인할 수 잇는 로쉬社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가 미국 FDA의 제한적 승인(사전 승인된 검사실에서 시범상요)을 받았다고 보도
- 스위스 입국후 자가격리 국가리스트 10개국 추가 총 55개국 발표(9.7). 한국 은 미포함.

ㅇ (체코) 지역감염 확산 초기단계 진입 발표

- 지난 주간 신규확진자가 680명 기록, 팬데믹 기간중 최고치 경신. 수도 프라하를 오렌지색으로 지정
- 국제공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밀접접촉 판단 앱 e-Rouska 업그레이드. 9.1일 이후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정책 시행중이나 9.1이전 여행 예약자는 입국 5일이내 발급받은 음성결과확인서 제출시 입국 허용 발표

2. 중국 동향

□ 북경 현지 현황

○ 베이징시, 9.3(목)부터 일부 국제항공편의 베이징시 직항 운항이 재개된다고 발표 [북경일보]

- 국제항공편 직항 운항 재개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9.3(목)부터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등 8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항공편의 직항 운항이 우선 재개된다고 설명

- 베이징 직항 국제항공편 탑승객은 통항 국가(지역)의 국민과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제3국 국민이 해당 지역에서 환승하여 베이징으로 입국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

3. 일본 동향

□ 일본 현지 현황

○ 일본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일부 재개 동향

- 9.8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총 5개국과의 왕래를 일부 재개*한다고 발표, 한국은 재개 협상 중

  * (대상) 주재원, 기능실습생 등 장기 체재자

- 자택 등 대기기간 중에는 호텔, 직장 등 한정적인 비즈니스 활동만 허용
- (기대효과) 기업 활동 활발화 및 정체되어 있던 상호 투자 진행

3 세계 각지 조선소/항구별 현지상황 (자료 : 한국선급, 9/4 기준)

※ 조선소 및 항구별 현황은 갑자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선소 및 에이전트를 통해 필히 확인 바랍니다.
※ 한국어 기준으로 기재하되, 영문내용만 기재 시 영문 기준으로 기재

Area	Nationality	Branch Office	Information
Asia	China	China HQ	- Government policy : Foreigners are not allowed and should not embark at the almost port entry of Superintendent , Service Engineer is possible, partially.
		Dalian	- 지속적으로 환자의 발생이 없어, 정부의 통일적인 규제가 모두 해제되었음 - 핵산검사 양성증명서 휴대 후 정상적인 검사 가능
		Qingdao	- 신조 블록, 현존선, 기자재 및 전문공급업자 검사 가능 - 모든 포트에서 한국인 검사원 승선불가, 일부포트는 현지검사원도 승선 불가 - 연태에서 선원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 중단 - 옌타이, 르자오, 칭따오 항구에서는 중국인 검사원도 승선 곤란 - 수리 조선소의 경우, 외국인 입국금지로 인해, 한국에서 감독이 선원신분으로 배에 승선하여 중국으로 입항 후 검사 또는 현지 한국에이전트를 통해 검사 수행 중
		Nanjing	- 2020.03.28부터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신조선의 Onboard test, 시운전 등의 일정에 차질발생 - 우한 지역의 봉쇄를 해제 하였으나, 검사원이 우한 또는 인근 지역 방문 후, 격리요건 강화로 실질적인 입회 불가 - Jiangsu 성 관내 항구 외국인(한국인 포함) 현조선 승선 불가 - 일부 수리조선소 영업재개 실시하였으나 한국인 승선 불가 - 관내항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출입허가가 수시로 변경, Case by case로 대응하고 있음 - Lianyungang 지역 신규확진자 발생 (중국인 선원)으로 항만 출입제한 금지 - 일부 후베이지역 방문검사 가능하나 검사지 이동경로에 위험지역이 포함된 경우 불가

		Shanghai	- 외국인 입국금지에 따른 전문공급업자 및 기술서비스 엔지니어의 업무 불가로 원활한 검사에 어려움 발생 - 한국인(외국인) 현존선 승선검사 불가 - 수리선: 검사 시 특별한 조건 없음 - 현존선 검사/심사 곤란, 항구에서 승선 검사 불가능
		Ningbo	- Port 별 현황 : 각 지역 PORT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승선불가. 다만 정확한 승선가능 여부는 CASE BY CASE로 지정된 AGENT 통해 확인. 베이징 발 강화된 방역통제가 닝보지역에도 영향, 조선소 입거 외 PORT내 각종 검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관내 조선소 현황 : 외국적선박 도착 후 방역 및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접안 후 검사 시작. 음성일지라도 본선에서 조선소 내 육지에 관련 승선인원 하륙불가 - 최근 한국에서 선원교대 선박 수리 입항전 외항에서 2주가 격리 요구
		Guangzhou	- 외국인 항만 출입금지
	Japan	Tokyo	- 한국, 중국 포함 107개국 입국금지 및 자국귀국민 전원 PCR검사실시까지 지정장소 대기 - Tokyo Alert 발령기준(Covid-19 감염경보 발령) 1) 7월평균확진자수 20인 이상, 동기간 감염경로 불명율 50%이상, 주단위 확진자 증가율이 100%이상 상기중 하나라도 상회하는 경우 경보발령 2) 경보 발령 시 출장 등 타 현 이동자숙 요청, 야간이동 자숙, 3밀(밀집, 밀폐, 밀접) 금지, 출/퇴근 만원열차 이용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3) 도쿄도 현재 경보발령 중이며 2)항은 권고사항임
	Thailand	Bangkok	[태국] -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금지(추가 공지 시까지) - 일부 지역 및 포트는 검사 가능 [방글라데시] -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금지(추가 공지 시까지) - 검사불가 [미얀마] -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금지(추가 공지 시까지) - 검사불가

	Vietnam	Hochiminh	[베트남] - 국경 봉쇄 - 전지역 이동제한 없으며 검사 가능 - 다낭시, 하노이, 하이증, 꽝남 및 꽝찌시에서 호치민시 도착 시 의료적 관찰 필요 (14일 시설격리, 자가격리, 자진모니터링 등) - 한국인에 대한 사증 발금 중지로 베트남 입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베트남 국내로의 모든 입국자 당국지정 시설에 14일 격리 - 특별입국허가를 일부 시행 함. (입국 시 베트남 정부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 대상 : 외국인 투자자, 기술전문가, 고급근로 인력, 기업관리자, 공무목적의 공무원 [캄보디아] - 국경 봉쇄, 검사 불가 - 당국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병원, 생필품 구입)를 제외하고 주(Province)간 이동금지
	Indonesia	Jakarta	-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 - 조건부 검사가능(코로나 검사, 허가증 준비)
	Philippines	Manila	-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 - 지역 및 포트 상황에 따라 검사가능(루손섬 일부 가능)
	India	Mumbai	[인도] - COVID Containment zone에 대한 Lock Down을 2020.09.30일 까지 연장 - 전세기를 제외한 국제선 항공운항은 금지되었지만, 국내선 항공은 운항 가능 [몰디브] - 국경개방, 검사 불가, 관광객 입국허용 [스리랑카] - 특별기를 통한 자국민 이국이나 인도적 목적의 하선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검사불가
	Singapore	Singapore	[싱가폴] - OPL 검사/심사 불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국경 봉쇄, 검사 가능

			[말레이시아] - 자국민 및 해당 외국인 입국 가능(단, 사전 입국허가 요망), 검사가능
	Australia	Sydney	[호주] - 국경 봉쇄, 검사 가능 [피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 검사 불가능
	Hongkong	Hongkong	- 홍콩 국적자 및 거주증 소지 외국인 제외한 입국 및 환승금지, 검사가능
	Taiwan	Taipei	- 원칙적으로 대만 국적자, 외교 및 거주증 소지 외국인만 비자발급과 입국을 허용, 검사가능
North/South America	Canada	Vancouver	- 국경 봉쇄 (9/21까지)
	America	Los Angeles/ Seattle	- 캐나다, 멕시코 국경 봉쇄(9/21까지) - State 간 검사지원은 선별적으로 가능
		Huston/ Panama	- 휴스톤: 미국 내 관할지역 port만 입회 (해외출장 불가) - Panama : Case by Case로 에이전트 통해 정부허가 득한 후 검사입회 가능 - 파나마 이외의 중남미 국가 검사 입회 불가
		New Orleans	- 주(State) 간 이동 금지 및 제한하는 곳이 많음
		New York	- LPG gasterminal COVID-19 점검표 작성 요구
	Brazil	Sao Paulo	- 국경 봉쇄 - 주요항만 체온 및 건강진단서 제출
	Argentina	Buenos Aires	- 국경 봉쇄 - 국내이동 및 검사 가능(사회이동통제 2020.8.30.까지 연장, 검사입회 72시간 전까지 Covid-19 테스트요구)

Europe	Greece	Athens	- Free moving around Greece, Restriction traveling to/from few ares.(eg Turkey, UAE) Depending on the regulation of the destination country. - Most restrictions lifted, All domestic transportations can be freely used. Mask use is mandatory in all indoor places, Most flights available - Covid test required for travelers or nto depending on origin country, Special form to be prepared 24 hou before travelling to Greece.
	Egypt, Rumania, Bulgaria, Malta, Cyprus etc		
	Denmark	Copenhagen	- Travel from EU and Shengen countries, as well as the UK whichever are categorized at a yellow risk level has been lifted from 27th of June. In addition, countries other than mentioned above confirmed as yellow risk have beed accepted to visit Denmark(Including Korea)
	Norway		- People arriving in Norway fro Red zone countries are to be 14days of quarantine mandatorily (Including Copenhagen Denmark)
	Sweden		
	UAE	Dubai	- No further movement restriction in dubai However, there is movement restriction between dubai and Abu dhabi in U.A.E
	Arabia Phe, Persian Gulf, Red Sea, Oman Gulf etc		- With COVID Test Result, Possible to enter (From July, Need the permission from authority), Carry out the test for COVID-19 (Quaranteen for 2 weeks)
	Republic of South Africa	Durban	- Border blockade - Restrictions on traffic are lifted except for night. (Request to restrict passage as much as possible) - Need a business pass when moving to another city. - When access to port and vessel following conditions shall be satisfied. * Documents requested by port authorities * Letter of agency permission

	South area of Africa		
	Germany	Hamburg	- No travel/going out restriction in place, Public transportation is available but limited number of flights, No entry control for the citizens/residents in Eu and some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Poland, Hungary, Russia, Finland, Czech etc		
	Turkey	Istanbul	- It can perform all survey and audit in turkey. However it can be visited at the Shipping Company
	U.K.	London	- There is a movement restrictions of traveling to Ireland, Iceland due to self-isolation for 14 days
	Ireland		
	Spain	Madrid	- 1st July~ Release of 14 days of self-isolation for foreign entry passengers. - If there is related documents for COVID-19, can access the port.
	Portugal, Moroco		[Portugal] - Release of 14 days of self-isolation for all local/foreign entry passengers from 1st July (Passengers must conduct a negative test within 72 hours prior to disembarkation or they may stare upon arrival) - For access the some ports in Portugal, COVID-19 test results are required. [Moroco] - Border blockade(Until further notice) - Prohibition of foreign entry, health emergency
	Italy	Milan	- Border blockade(gradually opening) - Permission to enter Italy by residents of 14 countries, including Korea(with self-quarantine 14 days) from 1st July

	Croatia, Slovenia, Swiss, Tunisia, Austria		- Croatia: (7/1 ~) Opening the border for EU+ countries - Slovenia: Opening the border for EU+ countries - Swiss: Opening the border for EU+ countries - Tunisia: (7/2 ~) Entry possible - Austria: Flight lines stop between Italy(~ 7/15), submission the report of infection or self-quarantine 14 days for foreigners entering the Schengen countries
	France	Paris	- No boarder closed. No restriction of movement was imposed. However, wearing of Mask is compulsory inside building and congestion outside areas such as in the park, rivers and resorts. Please refer to below for the recent situation in France
	Netherlands	Rotterdam	- Travel to code orange area - should go into 10days quarantine (Code oragne area - UK, Sweden, Barcelona, Antwerp, Brussel, Paris & outside EU)
	Luxemburg, Belgium		- Antwerp and Brussel area is risky area - Travellers should go into 10days quarantine

4	주요 국가별 EMS 특송현황 (자료 : 우정사업본부, 7/7 · 6/10 기준)

※ 우정사업본부 공지사항 URL : https://ems.epost.go.kr/front.EmsNewsList.postal?db=notice

□ 국제우편 EMS 접수가능 국가 안내 (7/7 기준

국제우편물 접수가능 국가

〈국가명 한글자음순〉

국가명	EMS	항공소포	선편소포	항공통상	K-Packet	선편통상	비고
남아프리카공화국	×	×	○	×	×	○	
네덜란드	×	×	○	×	×	○	
노르웨이	×	×	○	×	×	○	
대만	×	×	○	×	×	○	
독일	○	×	○	×	○	×	
러시아	○	×	○	×	○	○	
룩셈부르크	○	○	×	○	×	×	
말레이시아	○	○	○	○	○	○	
미국	○	×	○	×	○	○	접수지역 제한 등기통상 불가
바티칸	×	○	×	○	×	×	
방글라데시	×	×	○	×	×	○	
베트남	○	○	○	○	○	○	
부탄	○	○	×	○	×	×	
브라질	×	×	○	×	×	×	
산마리노	×	○	×	○	×	×	
스웨덴	×	×	○	×	×	○	
스페인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싱가포르	○	×	○	×	×	○	등기통상 불가
아일랜드	×	×	○	×	×	○	

국가명	EMS	항공소포	선편소포	항공통상	K-Packet	선편통상	비고
영국	○	×	○	×	○	○	
이탈리아	×	○	×	○	×	×	
인도	×	×	○	×	×	○	
인도네시아	○	×	○	×	×	○	
일본	○	×	○	×	×	○	접수지역 제한
중국	○	○	○	○	○	○	
캐나다	○	×	○	×	○	○	
태국	○	○	○	○	○	○	
페루	×	×	○	×	×	○	
폴란드	×	×	○	×	×	○	
프랑스	○	×	○	×	×	○	
핀란드	×	×	○	×	×	○	
필리핀	○	○	○	○	○	○	접수지역 제한
호주	×	×	○	×	×	○	
홍콩	○	○	○	○	○	○	

□ 국제우편 EMS 접수제한 안내 (6/10 기준)

■ 접수지역 제한

<table>
<tr><td>미국</td><td>

EMS 접수: 하와이 지역 접수중지
뉴욕교환국 해당지역 한달 이상 배송지연 (우편번호 001XX – 399XX)

Alabama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Atlanta
NewHampshire	NewJersy	NewYork	North Carolina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Vermont	Virginia
West Virginia	Washington D.C			

- 선편우편물 지역제한 없음

</td></tr>
<tr><td>필리핀</td><td>

마닐라섬 루손섬 외 나머지 지역 운송불가
(접수가능 우편번호: 마닐라섬(1로시작) 루손섬(25~,29~,33~,36~,38~,40~,48~,49~,51~,52~로시작)

</td></tr>
<tr><td>일본</td><td>

EMS 접수
일본 동경, 오사카 지역 외 접수불가
접수가능 지역 10~15일 지연, 상황이 급변할 경우 추가 지연될 수 있음

□ **동경**

고후	구리야마	군마	니기노	누마즈	니기타	도치기
도치오	도카마치	도쿄	마쓰도	마야기	미토	사가미하라
사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시즈오카	아오모리	아키타	야마가타
야마나시	야마토	오오타	요코하마	이바라키	이와테	지기사키
치바	키나가와	카마쿠라	카스기베	카와고에	키와구치	키와사키
하마마츠	하치오지	후치	후쿠시마	홋카이도	히타치	

□ **오사카**

고베	고치	교토	나라	도쿠시마	돗토리	사카이
시가	시마네	야마구치	에히메	오사카	오카야마	와카야마
카가와	토요나카	효고	히로시마			

- 선편우편물 지역제한 없음

</td></tr>
</table>

5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 : 외교부, 9/17(목) 18:00 기준) ※국가순서별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국 리스트는 동 게시글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	가나	▸9.1부터 코토카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8.30.)(단, 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 ※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 입국 후 신속 진단키트 검사 실시(검사비용 자부담)하여 △음성인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 가능, △양성인 경우 지정병원에서 관리
2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로·해로 국경 봉쇄 ※ 7.1.부터 항공을 통한 국경 개방(6.30.)
3	가이아나	▸국제선 운항중단(4.3.부터) ▸입국시 정부 지정 시설에 2주간 의무 격리
4	감비아	▸사실상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4.13일부터 45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 9.4.(금)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판정서 소지자의 의무격리 면제 제도 발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14일간 의무 격리 대상. (9.9 기준 육상 및 항공 국경 봉쇄 유지 중)
5	과테말라	▸국경 봉쇄 및 국제선 운항중단(3.16.) ▸9.18.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 재개(9.10.) ※ 입국 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미소지 시 14일 격리
6	그레나다	▸국경 봉쇄 및 국제선 운항중단(3.23.)
7	기니	▸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 항공기 탑승 전 5일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검사 방식) 제출 의무 ※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 ※ 출국 시 출국 3일 전 기니 국립공중보건연구소(INSP)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건강상태 신고서 제출
8	기니비사우	▸5.27.부터 출입국 허용,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 제출 필요(5.26.)
9	나미비아	▸9.1.부터 빈트후크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 ※ 관광 목적 외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 입국도 허용 ※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10	나우루	▸(입국전) 모든 여행객은 18개 국가*에서 14일 체류 후 나우루 입국 가능(7.24)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쿡제도, 피지, 프랑스령폴리네시아, 키리바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필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대만, 통가 투발루, 바투아누 - 입국전 14일 이내 상기 18개 국가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 나우루 입국 예외절차 신청 가능 ▸(입국) 모든 여행객은 △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성, △코로나19 증상, 코로나19 확진유무, 접촉여행 기록에 대한 평가, △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 △필요시 기타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검사 실시 ※ 모든 입국 여행객 지정 주거시설에서 격리, 입국지점부터 격리시설까지 교통, 숙식은 나우루 정부가 제공
11	나이지리아	▸(입국 전) △반드시 출발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 실시(72시간 이내 검사 권장)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사이트(http://nitp.nodc.gov.ng)에 결과 입력 필요(9.5) △상기 사이트상에서 현지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PCR 재검사를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 진행 및 자가진단서 작성 ▸(입국 시) 출발 전 PCR 검사 결과서 및 재검 예약증 제출 ▸(입국 후) △도착 후 7일간 자가 격리(보건당국 건강상태 모니터링 예정) 실시 후 예약한 장소에서 PCR 재검 실시 △재검 결과 음성 판정시 도착 후 8일째부터 격리 해제
12	남수단	▸외국에서 항공을 통한 입국 시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제출 필요(5.6.) ※ 상세 소지 필요 서류는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 육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3.24~)
13	남아프리카공화국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9)
14	네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9.1.부터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기타 네팔 정부가 주한네팔대사관을 통하여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 국제선을 이용하여 입국 가능
15	노르웨이	▸10.1.까지 역외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5.15.) ※ EU/EEA/쉥겐 회원국 대상 입국 허용 및 자가격리 면제(단, 8.15.부터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발 입국자 대상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재부과)
16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17	니우에	▸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4.3)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18	니제르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방역신고서 작성 ※ 자가격리 권고(단, 출장 등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
19	니카라과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 및 육로 입국 금지로 사실상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임시 특별기 등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단,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출발하는 경우 입국 전 96시간 내 시행된 검사 결과 제출)
20	대만	▸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친구 방문, 결혼식 참석, 문화활동 참석 등)의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24.) ※ 6.29.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영문본) 항공사에 제출 필요(단, 유효한 대만 거류증 또는 거류비자 소지자는 제출 면제) -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입경 검역시스템(https://hdhq.mohw.gov.tw/)'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단기 기업 출장자 포함) ※ 6.25.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계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6.24.) -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 - 단,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 ※ 외국인 유학생(졸업예정자, 재학생, 신규학위 과정 입학생) 입국 가능 (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시하고 입경검역시스템에 입경 신고 완료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대만 입경 후)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 →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로 방역차량 탑승→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21	덴마크	▸한국을 포함한 안전국가(지난 2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0명 이하인 국가) 거주민에 대한 국경통제 완화 ※ 입국 시 안전국가에 체류중이었다는 사실 입증 필요(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하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22	도미니카공화국	▸7.30부터 입국 전 5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모든 승객 대상 입국 시 신속진단 키트 검사를 시행(비용 무료) - 상기 결과 코로나19 양성이거나 유증상시 지정시설 격리
23	독일	▸EU+ 역외국가 국민 원칙적 입국 금지(6.15.) ※ 7.2.부터 EU+ 역외국가 전체 대상 입국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국 가능(주한독일대사관 공지 참고) - △독일 국적자, EU시민, 독일 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제3국적자, △보건인력, 보건 연구원, 요양원 인력, △독일 입국이 필수적인 해외전문인력 및 유능한 피고용인, △운송인력, △농업 분야 계절노동자, △선원, △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없는 학생, △동반가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 △외교관, 국제기구 인력, 군인, 인도주의 조력자, △종전 후 독일로 돌아온 이주민, △독일 경유자, △유학생 중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출석의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대학 측 확인서를 지닌 신입생 및 교환학생, △박람회 방문을 위한 출장용 입국(관련 서류 필요), △기숙학교 입학자(최소 6개월 이상 거주), △출장자 단기방문(관련 서류 필요) ※ 단, 사안별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 추진 단계에서 주한독일대사관 및 독일 연방 경찰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필요 ※ 10.1.부로 위험지역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제도 변경 -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 의무에 대한 관리 강화(입국 1일 이내 건강상태 신고서 관할 보건소 전달 등)
24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시 외국인 입국이 가능하나, 14일 격리(5.30) ▸4.4.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4.3)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25	라오스	▸9.3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8.31.)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서(RT-PCR만 인정) 지참 필요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 및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26	라이베리아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6.27.) ※ 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간이 테스트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격리, △음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 ※ 체온 측정 및 앱을 통한 전화번호 등록
27	러시아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 관련 외교, 관용, 일반비자 소지자, 외교부 결정으로 발급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러시아 연방기관(수입장비 주문자)이 보안부에 제출한 목록에 명시된 수리장비의 수리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체육 분야 고숙련 전문가, △본인 치료 목적 또는 환자인 친족의 간병목적, △외국인 고용주 관할 행정부 연방기관이 연방보안부 및 내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되어 고숙련 전문인력 자격으로 러시아연방을 일회성 입국하는 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체육 분야 고숙련 전문가 자격으로 러시아 연방을 입국하는 자 또는 러시아연방 내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자(단, 러시아 체육부, 연방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보안부, 내무부 및 항공청에 제출된 명단에 포함, 입국날짜 표기)의 경우 예외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식대표단은 제외
28	**레바논**	▸7.1.부로 국제공항 운영 재개 및 입국제한 완화 ※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96시간 내 출발국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항공편 탑승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검사 결과 미소지 시 또는 양성 판정 시 탑승 불가) ※ **(PCR 검사가 정확한 국가에서 입국한 승객)** 입국 후 PCR 검사 이후 48시간 동안 주거시설에서 자가격리, 동 격리기간 중 48시간 내 검사결과 통보 ※ **(PCR 검사가 부정확한 국가*에서 입국한 탑승객)** 레바논행 항공편 탑승 전 레바논 광광부에서 지정한 호텔을 예약(미예약시 탑승 불가) → 입국 직후 받은 PCR 검사 후 48시간 동안 호텔에서 자가격리 → 72시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서 추가 격리 및 2차 PCR검사 시행 * 이라크 및 모든 아프리카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가나/튀니지/알제리/모로코 제외) ※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https://arcg.is/0GaDnG에서 건강확인서 출력 및 작성 필요 ※ 만 12세 이하의 승객, UNIFIL 직원을 제외한 모든 도착 승객은 입국 직 후 공항 내 의료시설에서 다시 PCR 검사 시행(비용 50미불, 항공요금에 포함), 검사결과 48시간 내 통보
29	**르완다**	▸8.1.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7.29) ※ 르완다 입국·경유자는 △항공기 탑승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PCR)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72시간 전 www.rbc.gov.rw에 접속하여 입국 관련 정보(성명, 여권번호, 항공편 등)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입국자의 경우 예약한 호텔명 입력) ※ 르완다 입국자는 입국 직후 △코로나19 재검 실시(비용 자부담) 및 결과 판정 시까지 지정호텔에서 24시간 격리(르완다에서 지정한 호텔에 사전에 직접예약, 비용 자부담)
30	**리비아**	▸3.16.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31	**리투아니아**	▸EU차원의 국경통제 해제 권고 역외국가(한국 포함)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완화 ※ 단, 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5명 초과 발생 시 입국 불가하며 경유지 체류(환승 목적 입국 포함) 후의 입국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스위스, 영국 및 북아일랜드,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민 및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허용(단, 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25명 이상 발생 지역의 국민 및 거주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 모든 입국수단(항공, 선박, 차량 등) 탑승 전 리투아니아 국가공중보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증(QR코드)를 받아 탑승 시 제시
32	**마다가스카르**	▸3.20.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18.) ※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33	**마셜제도**	▸모든 국제 여행객의 입국 금지 10.5까지 연장(9.4.)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5.)
34	**마이크로네시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35	**마카오**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을 방문한 마카오 거주자 14일 격리(3.25.) ※ 중국본토,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본토에만 머무른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위험지역(후베이성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검역 조치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36	말라위	▸9.1.부터 제한적으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재개 발표(8.27) - 입국시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참 필요,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자국민 및 영주권자 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입국시 21일간 의무 격리 ▸4.1.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
37	말레이시아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①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족관계 증빙서류와 Dependent Pass 소지), ②영주권 소지자, ③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 ④외교관 - ①,②, ③의 경우에도 이동제한명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도 받아야 재입국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유효한 관련 비자 소지자 또는 승인된 관련 비자 신청자) * 아래 대상 중 현재 말레이시아 체류자가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출국 전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서한 필요, 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 - 취업비자-Caterogy 1 소지자와 거주비자-Talent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이민국장의 승인 없이 입국 가능(단, 7.11. 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출국 및 재입국에 대한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필요) * 입국심사위원회(Expatriate Committee)로부터 승인 받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자(Pass)가 만료된 경우에는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서한 및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단수비자(Single Entry Visa) 발급 후 입국 가능 - △취업비자-Category 2 및 3 소지자와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PVP)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는 관계 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 ※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공립 및 사립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해당 학교, Education Malaysia,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받은 후 입국 가능 - 기존 학생 : ①현재 유효한 학생 비자 소지자, ②2020.2.1.이후 비자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자(신규 학생 관련 입국 승인은 별도 공지시까지 보류) (②의 경우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 Single Entry Visa 발급 필요) ※ 7.24.부터 모든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부담) 실시 - 입국 전 : 시설격리 관련 LoU(Letter of Undertaking and Indemnity) 작성 및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 사본 송부,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 입국허가서를 발급, MySejahtera 앱 다운로드 및 필요정보 입력(LoU 원본, 입국허가서 및 기타 이민국 발행 입국가능증빙서류는 입국 과정 동안 소지 필요) - 입국 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항공사 규정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항공사 문의 필요 - 입국 시 보건부 건강검사를 통해 유증상자는 병원 이송,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
38	말리	▸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 ※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39	멕시코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9.21.까지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40	모로코	▸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9.6.부터 한국 포함 사증면제국가 대상 입국제한 완화 ※ △기업인/기술자의 경우 모로코 기업의 초청장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일반 방문객의 경우 모로코 내 호텔 예약 확인증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구비하여 주한 모로코대사관에서 입국증명서 발급 필요 - 모로코행 항공편 탑승 시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항체검사 결과 제출(도착 공항에서 비용 자부담으로 검사 가능, 만 11세 미만 어린이는 동 검사 면제) ※ △공항 도착 전 모리타니아 내 체류장소 확인서 제출(제공양식 사용), △모리타니아내 시행중인 보건지침 준수 △입국 시 체온측정 협조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확인 결과서 제시(필요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협조) △도착공항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14일간 격리 후 보건당국 감독하 코로나19 재검사 실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비용 자담 △입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 보건팀 조치에 따라 협조 ※ 경유 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준수
41	모리셔스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1.)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42	모리타니아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5.) ※ 육로국경 전면 폐쇄 ※ 특별허가를 받은 일부 국제선 운항
43	모잠비크	▸(비자) △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단 기술 이전, 봉사활동, 프로젝트, 인도주의 등의 경우 모잠비크 정부 승인 시 비자 발급 가능) ※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들 대상 체류기간 기산 잠정 정지 ▸(검역) △모든 입국자는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입국 시 10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종료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비 부담, 제출 불가 시 자가격리 4일 연장)
44	몰도바	▸8.31.부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50명 미만 국가(한국 포함)로부터 오는 외국인 입국 허용(단, 유증상 시 14일 자가격리 시행 가능) ※ 확진자가 50명 이상인 Red List 국가(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의 입국 불허 - 예외 : 몰도바 국민의 부모·자녀·배우자, 장기비자·거주허가·근로허가 소지자, 유학생, 교사, 단순 경유자, 몰도바 기업 초청장·근로계약을 소지한 몰도바 내 근로예정자, 외교공관 직원 및 그 가족 등(유증상시 자가격리)
45	몰디브	▸9.10.부터 입국 시 72시간 전 시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7.15.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 및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 발급 ※ △입국 전 사전에 등록된 숙박시설 예약 필수(체류 기간 중 동일 시설에서 머물러야 함), △공항에서 발열체크, △유증상인 경우 PCR검사(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 의무),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46	몽골	▸10.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환승) 금지(9.14.) ※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 몽골 정부의 허가가 있을 시 입국 가능 ※ 외교단 포함 입국자 전원 총 21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시설격리 기간 중 총 4회 PCR 검사 시행 - 한국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10.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9.14.) ※ 단, 임시항공편 부정기 운항
47	미국	▸(사이판)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1박당 $400 자부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이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거주자) 상기 절차 후 자가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자가격리 종료 (비거주자) 상기 절차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기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괌)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하와이) 10.14.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7.13.)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48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 격리 기간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 격리)로 확대 시행(4.11.)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6.19.) -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 -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 -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 -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 ▸9.30.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8.26)
49	민주콩고	▸8.15.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 작성
50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 소지자 예외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51	바레인	▸9.4.부터 도착 비자 발급 재개 ※ 단, 다음 해당자 외에는 입국제한 유지 - 바레인 국민, 거주하거증 소지자, 한국 등 도착 비자 발급 대상국 승객, 유효한 eVisa 소지자, 외교관,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상세 사항 www.evisa.gov.bh) ※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음성 결과 판별 시까지 자가격리 실시 및 입국 후 10일째 코로나19 재검사)
52	바베이도스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명서 지참 필요 ※ 온라인에 게재되어 있는 입국카드(ED)를 작성하여 바베이도스 정부에 제출하고, 바베이도스 정부에서 신청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확인서 지참 필요
53	바하마	▸10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PCR) 음성결과서, 도착 시 발열 검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7.22.부터 캐나다와 유럽 연합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
54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승객은 2주간 격리가 권고되며,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3.23.) - 법집행 기관이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추후 공지시까지 격리 지속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영문) 제출 의무(3.23.) ※ 3.23.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 무기한 금지(3.23.) ▸국제선 운항 중단(5.14)
55	베냉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시 48시간 격리하며 유전자검출 검사 대기, △양성 판정시 14일간 격리(지정호텔,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3.17.)
56	베네수엘라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시 14일 자발적 자가격리, △양성 판정시 의무격리(4.5.) ※ 베네수엘라 출·입국 모든 외국인은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3.18.) ▸10.12.까지 항공편 운항 중단 연장
57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58	벨기에	▸EU+(EU 회원국,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역외국가 대상 입국 금지(6.11.) ※ △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 △외교관,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운송업자, 타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 △국제보호를 원하는 난민, △필수 고급인력, △학생, △선원, △국제기구 회의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14일 자택 격리 및 14일간 출근 금지(재택 근무) ※ EU+ 역내국가 중 고위험지역(적색지역)* 및 EU+ 역외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 외 코로나19 검사 수검 필요 * 안도라, 불가리아(북동부), 크로아티아(스플리트-달마티아 주 등), 프랑스(파리, 센-생-드니 주, 발드마른 주 등), 몰타, 루마니아(부카레스트-일포브 지역 등), 스페인(아라곤, 마드리드, 바스크 자치주 등) - 벨기에 내 진단센터에서 받은 검사만 유효 - 체류 예정 기간이 48시간 미만인 경우는 검사 불요 ※ 여행 지역 및 수단과 관계없이 입국 시 위치 정보 양식 제출 필요
59	벨리즈	▸3.23.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2.) ※ 3.24부터 공항 폐쇄
6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9.12.부터 48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는 경우 입국 허용
61	보츠와나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3.28)
62	볼리비아	▸9.1부터 항공편 이용 입국 가능(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 ※ △체류국 내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허가 신청, △볼리비아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 인증 필) 제출, △입국 후 볼리비아 당국이 요구하는 검역절차 이행
63	부룬디	▸8.17부터 코로나19 음성판정서 제출 필요 및 입국 후 지정호텔에서 7일 격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비용 자부담)(3.12.) ※ 3.19.부터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연장 가능) ※ 3.21.부터 부줌부라 공항 폐쇄
64	부르키나파소	▸항공을 통한 입국 재개(7.28.) ※ △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8일째,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코로나19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신분증 제출, 코로나19 신속검사 및 PCR 검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경유 승객의 경우 △48시간 이내 경유시 호텔 등에서 시설 격리, △48시간 초과시 신속검사 및 PCR 검사 실시
65	부탄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66	브라질	▸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추면 항공을 통한 외국인 입국 허용 ※ 단기 방문(90일 이하)의 경우, 탑승 전 항공사에 브라질 체류 기간 동안 코로나19 등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보험증명서(체류기간 커버, 보장금액 범위 약 한화 7백만원) 제시 필요 ※ 단, △고이아스주, △마토그로수두술주, △히우그란지두술주, △혼도니아주, △호라이마주, △토칸칭스주 소재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 불가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 금지(7.29.)
67	브루나이	▸3.24.(화)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3.24.) ※ 단, 9.15(화)부터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하에서 입국 승인 -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신청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여행자는 △브루나이 입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 국가에서 체류,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브루나이 도착 후 2-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실시, △브루나이 도착 후 최소 14일간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 준수
68	사모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1.) ※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
69	사모아(미국령)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스크리닝)을 받은 후 검진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3.24)
70	사우디	▸국경봉쇄에 따른 외국인 입국금지 ※ 3.15.부터 국제선 운항 중단
71	상투메프린시페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5.4.)
72	세네갈	▸7.1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허용 ※ (항공기 탑승조건) -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7일 이내 출발국 내에서 정부 인증기관 혹은 국제 인증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경유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거나 경유 공항을 벗어난 승객은 코로나19 증상 여부,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기술하는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 출발국가의 의료 여건 상 코로나19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검사를 희망하더라도 검사받을 수 없는 국가에서 출발한 승객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 (공항 입국 조건) -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입국(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 - 그 외 승객들의 경우,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증상 여부, 출발지, 경유자, 경유지 체류 시간 등)를 한 후 검사 여부 결정 ※ 우리 국민 90일 간 무비자 체류 가능
73	세이셸	▸29개국* 대상 입국 허용(8.31.) * 오스트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카타르,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스위스, 태국, UAE
74	세인트루시아	▸7.9.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음성확인진단서를 제출 ※ 세인트루시아 도착 전 정부 홈페이지(www.stlucia.org)상에 있는 여행등록서에 코로나19 음성판정임을 증명하고, 체류할 호텔명 제출 ※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 ※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입국수속 후 코로나19 지정 호텔 등에서 체류 - 미소지 입국자는 즉시 격리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됨(자비 부담)
75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7.1) ※ 8.1.부터 7월 중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하여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는 대상 국가 선정
76	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77	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
78	수단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7.14.부터 10.10.까지 카르툼 국제공항 내 △UAE, △이집트, △터키 출발 항공기 착륙 허가 등 공항 폐쇄 일부 완화(7.13.) - 외국인은 수단 입국 전 72시간 전 시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79	수리남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80	스리랑카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3.22.) ※ 공항 안에서 머무르는 조건으로 12시간 내의 환승 허용 ※ 체류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소지한 모든 비자의 효력 중단, 신규 비자발급 중지
81	스웨덴	▸7.4.부터 EU+ 역외국가 중 한국, 알제리, 호주, 조지아, 일본, 캐나다, 모로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14개국을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 ※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 입국 가능(최대 90일) ※ 상기 입국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체류 국가'에 따라 적용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의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와 스웨덴 도착 시 한국에서 출발하였다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영문 또는 스웨덴어로 번역된 자료 구비를 추천) ※ 단, 그 외 EU+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8.31.까지 연장
82	스페인	▸7.4.부터 한국 포함 12개 EU+ 역외국가* 대상 입국 제한 완화(7.3.)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 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①온라인으로 특별검역신고서 필수 작성, 입국시 QR 코드 제시 -여행 전 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 다운로드 ②발열 체크, ③대면 심사
83	슬로베니아	▸9.13.부터 한국 등 코로나19 위험도 황색국가군 출발 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 필요 - 예외적으로 월경 노동자, 화물차량 운전자, 의료검진 및 장례식 등 목적 방문, 공무 목적의 외국 대표단 등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48시간 이내 발급)를 제시하여 자가격리 면제 가능 - EU/쉥겐 지역 내에서 이동한 경우, 적색국가 미방문 사실을 입증(호텔 예약 등 제시)하는 경우 자가격리 불필요 ※ 입국객의 출발국내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3개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국경 통제 중
84	시에라리온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 3.19부터 모든 항공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사실상 입출국 불가
85	싱가포르	▸3.24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8.29.부터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는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비용 정부 부담),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시행 및 비용(200 싱달러) 자부담 ※ 8.29.부터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2000 싱달러 자부담),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시행 및 비용(200 싱달러) 자부담 ※ (경유 제한적 허용) 단, 6.11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도시*, 6.23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일부 도시**에서 출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사 항공(싱가포르 항공, 실크에어, 스쿠트 항공) 이용 승객에 한해 창이공항 환승 가능 *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번, 퍼스, 시드니 /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한국) 서울 / (중국) 홍콩, 중경, 상해, 광주 / (일본) 오사카, 동경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86	아랍에미리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7.1.)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UAE 거주비자 소지자는 △재입국용 포털사이트(uaeentry.ica.gov.ae)에서 신분증 번호, 여권 번호 등 입력, △항공기 탑승 전 출발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자가진단앱(Al Hosn)을 다운받고 14일 동안 자가격리 실시 등을 요건으로 입국 가능하나, 요건 변경 가능하니 출발 전 확인 필요 ※ (두바이) 7.7.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 -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 8.1.부터 두바이에 도착하거나 두바이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지정 기관에서 96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두바이 장기거주비자를 소지한 경우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서(GDRFA)에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 필요 - (경유) △수하물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경유 최대 24시간 허용(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수하물을 찾아 재수속 필요), △수하물이 없는 경우 공항 터미널 내 호텔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가능 ※ 두바이 등 여타 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발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 9.9.부터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문비자 소지자는 14일간 아부다비 진입 불가, △아부다비 거주비자 소지자는 접경 지역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주재국 정부 제공 시설에서 대기 후 14일 격리(시설 또는 자가)
87	아르메니아	▸외국인의 항공 입국 허용, 육로 입국 제한 유지(9.10.) ※ 9.11.부터 국가비상사태 종료 ※ 육로 입국은 금지(단,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 △해당 국가의 방역 상황에 따라 아르메니아 정부로부터 특별 입국이 허가된 자의 경우 예외) ※ 아르메니아 국경 검문소 비자발급 중단 - 재외공관 및 e-visa 시스템을 통해서만 입국비자 발급 가능 ※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감염검사 실시 -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14일 자가격리 조치(자가격리 기간 중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88	아르헨티나	▸9.2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8.28.) ※ (이민청)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시행 이후 30일씩 체류기간을 연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의무자가격리 조치(3.20.)이후 만료되는 무비자 및 장기체류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간 연장 ※ 9.7.(월)부터 서약서 의무 제출(14일간 의무 자가격리 규정 준수,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한 불이익 감수, 타국에서 아르헨티나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제한 조치로 인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귀국 지원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 포함)
89	아이슬란드	▸7.16.부터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입국 가능(7.16.) * 한국,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필요서류) △유효한 여권, △한국 내 거주중임을 증빙하는 서류(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한국에서 출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 ※ 입국 전 사전 등록 필요, 아이슬란드 도착시 (①코로나19 진단검사(PCR) 시행(비용 자부담), ②14일 의무 자가격리) 중 선택
90	아이티	▸탑승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시 발열 검사
91	아일랜드	▸4.24(금)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4.24) ※ 모든 승객들은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제출
92	아제르바이잔	▸9.30.까지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아제르바이잔 국민 귀국 목적으로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런던 및 두바이 간 특별 항공편을 운항중이며,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동 항공편으로 입국 가능(항공편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격리 면제)
93	알제리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28.)
94	앙골라	▸6.30.부터 앙골라 외교부, 내무부 및 교통부의 사전승인 하에 내국인, 외국인 체류자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영주권자, 외교관, 투자, 유학, 노동비자 소지자 등) 출입 허용(6.12.)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단, 국경봉쇄는 유지)(8.7. 대통령령 발표) ※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8.15.부터 내국인 및 거주 입국자는 자가격리(앙골라 입국 전 출발국에서 실시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앙골라 보건 당국에서 요청하는 자가격리 책임 동의서 서명 필수) - 단, 보건 당국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 환경이 부적합시 시설 격리가 가능하며, 앙골라 비거주 외국인 입국자(코로나19 음성확인자)의 경우 시설격리 -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7일 후 RT-PCR 음성 판정 확인서와 함께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퇴소확인서 수령 후 격리 해제 가능
95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96	에리트레아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 금지(3.25.)
97	에스와티니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15)
98	에콰도르	▸8.15.부터 입국 전 10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고, 도착 시 무증상인 경우 의무 격리 면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으나 도착 시 유증상인 경우 입국 시 PCR 검사(자부담) 후 임시 숙소에서 10일간 의무 격리(유증상자의 경우 최소 3일 추가),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 증상은 발열, 몸살, 근육통, 관절통, 미각 상실, 기침, 두통, 설사 등 포함
99	에티오피아	▸입국 전 5일(120시간) 내 음성판정을 받은 확인서 제출시, 진단검사 샘플 채취 후 14일 자가격리(7.22) - 음성판정확인서가 없는 경우, 7일간 정부 지정시설(호텔 등)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 입국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착비자(On Arrival Visa) 발급 제한, 방문 목적에 따라 출발전 E-Visa(www.evisa.gov.et)을 통해 신청 및 발급 ※ 경유승객은 공항내 Interline office에서 경유 비자(20미불) 발급 가능, 경유 최대 시간은 72시간(경유시간 72시간 초과시, 출국시 추가 50미불 지불)
100	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거주비자가 있는 외국인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15일간 격리
101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 최근 14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102	오만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단, △소속 회사, △대사관, △국영항공사(Oman Air 및 Salam Air)를 통해 오만 외교부에 입국 허가를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 - 외국인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입국자는 「Tarassud Plus」앱 다운로드 및 위치추적 스마트 밴드 구입(5리얄), △오만 내 유효한 여행자 보험 가입 - 외교관의 경우 상기 규정 예외, 14일 자가격리 의무
103	오스트리아	▸추후 공지시까지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7.1.)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호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및 안도라, 불가리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모나코, 루마니아, 산마리노, 바티칸, 영국, 사이프러스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4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6.11) ※ 쉥겐 지역 밖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EU/EEU/스위스 국적자와 그 가족, △오스트리아 D비자 보유자, △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격 보유자는 4일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6.11) ※ 31개 유럽국가*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6.11.) *안도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산마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리노,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바티칸, 사이프러스
104	온두라스	▸8.17.부터 4개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임시적 허용(단,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불시에 입국금지 가능) * Tonconin(테구시갈파), Ramon Villeda Morales(산페드로술라), Juan Manual Galvez(로아탄), Goloson(세이바) 국제공항 ※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됨 ※ 입국 전 이민청의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를 통해 입국 신청 ※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특이도(specificity) 85%·민감도(sensitivity) 98% 이상의 신속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 입국 후 자가격리는 불요하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발효 중인 통행금지로 이동이 제한됨 - 슈퍼마켓, 은행 등 필수 상업시설은 여권 뒷자리에 따라 대략 2주에 1일 이용할 수 있음 - 숙박예약 내역서, 패키지여행 구매 내역서, 교통수단 탑승권, 자동차 렌트 내역서 등을 소지하거나 온두라스인이 신청하는 특별통행허가증에 동행인으로 등록하여 단순한 통행 가능
105	요르단	▸9.8.부터 국제공항 운영 재개 계획 발표(9.2.) ※ △출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요르단 입국 후 1주일 시설격리 및 1주일 자가격리(동선 확인용 전자팔찌 착용 의무 등), △입국 후 2차 코로나19 검사 실시(비용 개인 부담)
106	우간다	▸추후 공지시까지 국경 봉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입국 금지(6.1.)
107	우루과이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입국금지(3.24.) ※ 단, △우루과이 거주 외국인,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외교관, △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 선박, 항공기의 승객, △난민, △가족 간 재회의 사유, △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 경제적,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가능(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실시)(6.8) ※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7.6.) - 상세한 조건 내용은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3.30.부터 우루과이 연결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중단(3.28)
108	우즈베키스탄	▸9.20.까지 한국 포함 황색국가발 입국자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본) 제출 의무 ※ 방역등급 재조정 시 입국 관련 조치 변동 가능하므로 주의요
109	우크라이나	▸8.28.부터 9.28.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예외 : 우크라이나 국민의 가족, 체류허가(거주허가)/근로허가 소지자, 기업초청 기술 전문가, 단순 경유자, 2일 내 출국 확인문서 소지자, 학업목적 방문자, 외교공관 직원 및 그 가족,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초청 방문자 등 - 입국 시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 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필요
110	이라크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 운항 중단(5.11) ※ 특별 목적 항공기 운항은 건별 승인 ▸모든 입국자는 이라크 정부의 초청장 및 건강증명서 소지, 입국 후 회사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면서 보건부에 경과 보고(5.11) ※ 외교관은 건강증명서 소지, 입국 후 대사관 건물내에서 14일간 격리 실시 ※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부 지정병원에서 격리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증명서 소지(외교관 예외 없음) ※ 8.15.부터 이라크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은 PCR 음성증명서 소지 의무(단, 전세기는 예외 적용 가능)
		▸(쿠르드지방정부) 외국인 입국 허용(7.23) ※ 도착 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제시 또는 자비부담 PCR 검사 후 14일간 자가격리(서약서 작성) -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된 대표단, 출장자 및 단기 관광객은 자가격리 불요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11	이란	▸도착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검사 및 격리비용 자부담) ※ 8.2.부터 관광비자 및 도착 관광비자 발급 중단(노동, 유학, 종교 등 복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
112	이스라엘	▸10.1.까지 非그린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8.23.) ※ 그린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2주간 격리 의무 면제
113	이집트	▸9.1.부터 항공, 육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현지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6세 미만 아동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샤름엘셰이크, 후루가다,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다만, 상기 지역에서 타지역 이동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의무 ※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행자보험 필요. 항공사 조치가 수시 변경되므로 항공사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필요
114	이탈리아	▸7.1.부터 한국 포함 10개 EU+ 역외국가(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튀니지, 우루과이) 대상 입국 제한 완화 (10.7.까지) ※ 입국 시 입국사유 신고서 제출, 14일간 자가 격리 ※ 인근 4개국(스페인,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발 입국자 코로나 전수 검사 ※ 상기 국가 외 제3국 입국 제한 유지 - △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권고, △체온 37.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 △탑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 △입국자 전원(무증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 시민 보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관련 비용은 자부담) - 격리의무 예외 : 업무·건강상 필수 목적의 단기체류자(120시간 이내 체류자) 및 항공기 승무원 등 ※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 가능(최대 90일)
115	인도	▸국제선 여객기 운항 중단(5.25.) ▸(신규비자 제한적 발급) 인도 입국 불가피성 입증 및 탑승권 제시 필요(6.2.) ※ 고용 ·프로젝트 비자를 제외한 기존 모든 비자 효력 정지 ※ 비즈니스 비자, 의료전문가, 보건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입국 허용(해당국 인도대사관에서 비즈니스 또는 고용 비자 신규 발급 필요)(6.2.) ▸(격리조치)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에 따라 조치(5.24.) ※ 원칙적으로 격리기간은 14일(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이나, 8.8.부터 출발 전 72시간 전에 포털(www.newdehliairport.in)에 self-declaration,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발전 96시간 내 발급)를 제출하면 시설격리는 면제되어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 (자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8.3.) -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시 입국심사장에서도 확인하므로 반드시 소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116	인도네시아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 ※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로서 체류기간 및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 (입국 방역조치)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전 7일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건강확인서를 소지, △건강확인서 미소지, 7일이 경과한 PCR 음성결과서 소지, PCR 음성결과 미포함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 실시, △신속진단 결과 양성이면 지정 병원으로, 음성이면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PCR 검사 실시 ※ (입국 후 관리대책) 14일 동안 자가격리 (건강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를 관할 보건당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국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 미흡)
117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미국 등 159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등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 ※ 일본 체류자격 보유자는 9.1. 이후 아래 절차에 따라 재입국 가능 ① 8.31.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체류 국가·지역의 일본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받은 「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와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검사증명」을 소지 ② 9.1.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받은 「수리서」와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검사증명」을 소지 - 수리서를 교부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됨 ※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신규 입국자), 해외 소재 일본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 및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검사증명」을 소지 ※ 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 수리서 및 검사증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 ▸(사증 제한) 추후 공지 시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8.31.) ▸(검역 강화)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이용 자제 요청, 한국 등 입국 금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118	자메이카	▸6.15.부터 국제 공항 및 항구 운영 재개 ※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여행허가 취득 필요 -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14일간 자가격리) -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시행, 숙소 또는 정부시설에서 결과대기(음성 시 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 -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도착 후 14일간 지정된 관광 허용 구역만 방문 가능) - 사업목적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6.29) - 코로나19 고위험국(미국,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도착 전 10일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입국 전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visitjamaica.com)에 접속하여 PCR 검사 결과서 업로드 후 여행허가 취득)
119	잠비아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7.27.) ※ 입국자 중 일부 승객을 정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재실시 ※ 입국 시 작성한 건강체크리스트 및 제반서류의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부서의 모니터링을 14일간 받음
120	적도기니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6.12) ※ 모든 국제선 승객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 미지참시 검사비용 지불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박시설 대기 ※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 관계자는 입국 전 사전에 주재국 외교협력부에 항공편 정보(편명, 출발지 등)를 포함한 소속직원(가족 포함)의 도착 날짜 및 시간 통보
121	조지아	▸국경봉쇄 및 외국인 입국금지(6.25.) ※ 국제선 운항 재개 10.1.까지 연기 ※ 단,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14일 자가격리 또는 매 72시간마다 PCR 검사 실시 중 택일 가능 - 14일 자가격리 및 PCR 검사 비용 모두 방문객 본인 부담으로, 매 72시간마다 PCR 검사를 선택할 경우 격리 없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목적 방문은 조지아 정부 웹사이트(www.stopcov.ge)에서 사전 신청하고, 조지아 정부 승인 후 입국 가능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22	중국	공통		▸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경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영사 및 비자 업무-'유학, 취업 등 비자 신청 안내' 공지문 참고 ▸ 9.9.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3일(72시간) 내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PCR) 후 음성증명서 발급 및 제시 요망 ※ 상세 실시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및 비자 업무란 공지문 참고 ▸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4.1) ▸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의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바, 해외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1	간쑤성	▸ **간쑤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7) ▸ **란저우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기본정보, 입국정보 등을 사전 보고하고, 란저우 도착 후 핵산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일 경우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3)
		2	광둥성	▸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 △홍콩·마카오·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 있는 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단, 어린이(만 14세 미만),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현장 신청시 각 시·구에서 판단하여 자가격리 전환 가능 (일부 지역에서는 14세 미만도 자가격리 전환 불인정 등 제한적으로 실시) ※ 광둥성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추가(1~2회) 핵산검사 실시 ※ 3.27부터 광저우 바이윈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광저우 경유자 포함)은 거주지 불문 전원 공항 소재지인 광저우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선전 바오안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거주지 불문 전원 공항 소재지인 선전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3	광시좡족자치구	▸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
		4	구이저우성	▸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9)
		5	네이멍구자치구	▸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로 이동 가능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또는 자가격리 후 핵산검사 재실시 요망
		6	닝샤후이족자치구	▸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6) ※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7	랴오닝성	▸ **랴오닝성 진입시**, (공항, 항만, 육로를 통해)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4.14) ※ (선양시) 선양시 거주자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 7일간 자가격리
		8	베이징시	▸ **베이징시 진입시,** 6.8.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객 전원(환승객 포함)은 16개 지정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다롄, 정저우, 시안, 청두, 창사, 허페이, 란저우, 우한(예비)) 경유지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후 우회 입경만 가능(모든 비용 자부담) - 해외에서 입국하는 인원은 경유지나 목적지에서 14일간 시설 격리 완료시 베이징 복귀 후 추가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 실시(4.30) ※ 입경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 입경 시 공항, 역, 검문소별 지침 숙지 및 검역 협조(경유지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증명서 반드시 지참) ※ 4.30.부터 호텔 투숙시, 핵산검사 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젠캉바오(健康宝) 그린 바코드를 제시해야 체크인 가능(호텔에 사전 연락하여 투숙시 필요사항 문의 요망)
		9	산둥성	▸ **산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산둥성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31) ※ 해외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항공편을 통해서만 산둥성에 진입할 수 있으며, 최초 도착지에서 격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3.27) ※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자가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
		10	산시성 (陝西省)	▸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격리 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7) ※ (시안 셴양공항)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3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 격리 ※ 시안 경유 승객도 같은 항공기에 동승한 기타 승객 발열시 시안에서 격리조치될 가능성(발열자가 확진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병원 격리 가능)(비용 자부담)
		11	산시성 (山西省)	▸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5.19)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2	상하이시	▸ **상하이시 진입시**, 7.26까지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 7.27. 00:00부터 이하 조치 적용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②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격리방침 준수(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 ③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단,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자, 노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자, 기저 질환자 등은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신청 가능 ※ 3.25부터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국제선(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
		13	시짱자치구	▸ **시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6.8)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4	신장위구르자치구	▸ **신장위구르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6.8)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치고 진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제출 요구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재실시
		15	쓰촨성	▸ **쓰촨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7) ※ 14일 지정시설 격리해제된 후에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 심사
		16	윈난성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6)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 호텔,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에 입국 계획 통지 필요 ※ 윈난성 경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19개 육로 입국장 및 14개 통로 여객 운송 기능 잠정 중단, 기타 통로 폐쇄)
		17	장시성	▸ **장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장시성 경유자 포함)은 핵산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유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5)
		18	장쑤성	▸ **장쑤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 상이)(3.23)
		19	저장성	▸ **저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3.18)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경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경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20	지린성	▸ **창춘공항**,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옌벤주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 기저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 ※ 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복귀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 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이 외 이동 비용·핵산검사·폐 CT검사 비용은 무료
		22	충칭시	▸ **충칭시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3.26)
		23	칭하이성	▸ **칭하이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6.8)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요망
		24	톈진시	▸ **톈진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입국 시 1회, 격리 기간 중 1회) 실시(비용 자부담)(6.5)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25	푸젠성	▸ **푸젠성(샤먼시, 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3회 실시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단,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불요) ※ 샤먼시 :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2회 실시(만 2세 이하는 면제 신청 가능) 푸저우시 :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연령 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현장 방역팀에 직접 면제 신청) ※ 만 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가 어려운 경우 현장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가능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 도시에서 21일 이상 체류 후 방문 시 격리 면제 가능(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필요)
		26	하이난성	▸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 단, 만 70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단독 거주지가 있고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전 거주지 소재 시·현 지휘부에 신고 후 허가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필요시 보호자 1인까지 동반 자가격리 신청 가능)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27	허난성	▸ **정저우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의학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3.29)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허난성 입국 예정자는 입국 48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회사가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거주지 방역지휘부서에 관련 정보 신고 요망
		28	허베이성	▸ **허베이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 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29	헤이룽장성	▸ **헤이룽장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2차례 핵산검사, 1차례 혈청항체검사 일괄 시행)(모든 비용 자부담)(4.2) ※ 운송수단 승선 검역,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 체온 측정, 역학조사, 샘플 채취,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30	후난성	▸ **후난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31	후베이성	▸ **우한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 소지 필요
123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21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 ▸ 국제공항 폐쇄(4.2)		
124	지부티	▸ 7.17.부터 국경(육해공) 재개방 ※ 모든 내외국민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125	짐바브웨	▸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126	차드	▸ 8.1.부터 입국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7.30.)		
127	칠레	▸ 9.29.까지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거주비자와 현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외) 대상 입국금지(9.11.) ※ 입국 가능 대상자 14일 의무격리 면제 절차 신설 및 발표(8.30.) ※ 칠레 사증 보유자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 환승 및 출국은 가능(4.22.)		
128	카메룬	▸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기존 복수비자 소유자는 입국 가능)		
129	카자흐스탄	▸ 한국 출발 직항 항공편 이용 경우에 한해, 1회 입국시 최장 30일 무비자 입국허용(6.29) - 방역지침에 따라,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 입국은 불가(8.21)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 입국이나 환승 희망시, 사전 입국 허가 필요 ▸ 6.20.이후 한-카 정기 항공편 탑승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면제 (6.15.) ※ 카테고리 1 국가(한국, 중국, 일본, 조지아, 태국, 독일, 체코, 말레이시아, 헝가리, 인도, 아랍에미리트, 벨라루스, 터키, 이집트,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러시아) 출발 정기 항공편 입국자는 발열검사, 건강관련 설문지만 작성 (입국前 코로나 19 검사 불요. 입국後 코로나19 검사 면제) ※ △카테고리 2 국가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출발 정기 항공편 탑승 입국자, △카테고리 1과 2 이외 여타 국가 출발 비정기 항공편 탑승 입국자는 입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국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소지 시 검사 면제 ▸한국 등 상기 정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국가로의 자국민 출국 허용(6.22)
130	카타르	▸4.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4.15.) ※ 8.1.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가(한국 포함 40개국)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7.21.) - 입국 허가 신청 필요(관련 내용은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자가격리 서약서 작성, 7일간 의무 자가격리 - 입국 후 6일 째 되는 날 재검사, △음성인 경우 입국 후 7일차에 격리 해제, △양성인 경우 14일간 추가 의무격리 실시
131	캄보디아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3.30. 23:59부터)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72시간 이내(비행기 도착시간 기준)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 ※ △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입국즉시 코로나19 검사 후 지정시설 24시간 격리, 보험증서 불요),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3.31.) ▸(입국 절차) 캄보디아 도착 후 임시 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하며,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시 2,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6.15.) ※ 전체 승객이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한명이라도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승객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5.20.)
132	캐나다	▸9.30.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30) ※ 6.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14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9.21.까지 캐나다-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7.16.)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133	케냐	▸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7.30.)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코로나 증상(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한국 등 주재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적용) - 음성확인서는 케냐 도착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발급받은 영문확인서만 인정(한글 및 번역확인서는 불인정, 검사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 여권번호,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 ※ 통행금지 시간(오후9시~익일 오전 4시) 이후 입국자들은 유효한 항공권(탑승권 등) 지참시 호텔 혹은 거주지까지 이동 가능
134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135	코스타리카	▸한국 포함 44개국 및 미국 17개주에서 항공기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적 허용 ※ △입국 전 입국 허용대상 국가에서 최소 14일간 체류, △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전자 자가진단서 및 항공기 탑승 최대 72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영어, 스페인어만 인정)를 시스템상 제출(서면제출 불가), △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S)에 보험가입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비용(입원비) 및 최소 14일간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의 숙박비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 가입, △코로나19 증상 미발생 ※ 영주권자 등 각 자격별 입국 조건은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136	코트디부아르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8.5.)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3일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 감염력이 명시된 혈청검사서 제출) - PCR 음성 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서 미제출 승객은 14일 격리
137	콜롬비아	▸3.17.부터 국경을 봉쇄하여 내외국인 입국 금지(3.16.)
138	콩고공화국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6.6.)
139	쿠바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31.~)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
140	쿠웨이트	▸8.1.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 외 제3국가에서 최소 14일 이상 체류하고 PCR 음성 확인서(72시간 이내 발급) 제출 시 입국 허용(8.1)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네팔, 중국,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스페인, 싱가포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라크, 멕시코, 인도네시아, 칠레, 이집트, 레바논, 홍콩, 이탈리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파나마, 페루,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도미니카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2019년 9월 1일 이후 쿠웨이트를 출국했더라도 유효한 쿠웨이트 거주비자 및 Civil ID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141	쿡제도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4~.)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142	크로아티아	▸9.30.까지 한국 포함 비 EU 및 비쉥겐협약가입국 대상 입국 제한적 허용 - (관광·경제활동·유학 목적 입국자) △입국목적 증빙(숙소예약 확인서, 유학 증빙서류 등), △검체 채취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제출(미소지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해제) - (긴급목적·인도적 사유 등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원칙(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 - 일반 방문의 경우 개인 거주지에 체류할 목적의 입국은 불가, 숙소 예약확인서 등 증빙 필요, 개별 입국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내무부 웹사이트(http://mup.gov.hr/uzg-covid/286210)에서 확인, 온라인출입국심사(https://entercroatia mup.hr)에 개인 입국정보를 사전 등록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 △상용/인도적 목적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육로 경유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혹은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나 12시간 내 출국 필수(최종 목적지 국가로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143	키리바시	▸3.20.부터 추후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경봉쇄(5.4.)
144	타지키스탄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4.8.)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승무원, △화물 운송 담담 기사 등은 입국 가능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은 14일간 보건당국 감시 하 자가 격리 ※ 정부 발행 입국 허가서, 비자 및 주재국 입국 전 96시간 이전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자는 입국 가능하며 입국 후 격리 면제
145	탄자니아	▸8.5.부터 모든 여행객(복귀 거주자 포함)은 소속 국가 또는 이용 항공사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 것을 여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탄자니아 도착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146	태국	▸7.1.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여객기 승무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의료목적,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대표단 및 배우자, 부모, 자녀, ※ (태국 입국 전 조치)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주재국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발행 입국허가증(COE), △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to-Fly Health Certificate),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 △출발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태국 입국 후 조치)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필수지참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설치,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 △RT-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
147	**토고**	▸8.1.부터 모든 입·출국자는 https://voyage.gouv.tg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입국자의 경우 로메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경유자 제외) ※ Togo Safe 모바일 앱 설치
148	**통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0.)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149	**투르크메니스탄**	▸3.20.부터 모든 내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4.10.) ※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국제운항 종사자,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 입국 허가 - 출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 외교단 및 국제기구 근무자는 입국 시 코로나19로 인한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검문지점에서 검진 후 음성결과라도 14일간 자가격리 및 재검진
150	**투발루**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한 고위험국가를 여행한 승객의 경우 3일 전 검역 당국에 의료소견서 제출(5.8) - 입국 전 최소 5일간 비고위험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피지, 키리바시, 투발루 공항에서 건강검사 실시
151	**튀니지**	▸8.26.부터 한국 등 코로나19 위험도 녹색 국가군 출발 입국자는 입국 시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급된(120시간 이내 도착 필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8.19.) ※ 입국객 출발국내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3개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방역조치 중이며, 한국발 입국객의 경우 현재 저위험국(7일간 자가격리 권고)에서 추후 중고위험국으로 재분류 시 14일 의무격리 원칙 적용
152	**트리니다드토바고**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3.) ※ 추후 공지시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5.9)
153	**파나마**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검사 결과 제출 및 14일간 자가 격리 ※ 선박의 승·하선 임시중단(3.13.)
154	**파라과이**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30~)
155	**파키스탄**	▸파키스탄발 국제 항공편 일부 운항 재개(5.30.) ※ 입국 시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보건 당국이 모니터링),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운영 격리 센터(무료) 또는 지정 호텔(자부담)에서 격리
156	**파푸아뉴기니**	▸별도 공지시까지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만 입국가능(6.17) ※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음성결과 필요(7.20.) - 동 진단검사는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반응법(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만 인정 ※ 파푸아뉴기니 거주 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파푸아뉴기니 국민 또는 영주권자는 지정시설(국가부담) 지정호텔(비용 자부담)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외교관 여권소지자는 14일간 자가격리 가능(입국전 사전 승인 필요)
157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58	**페루**	▸9.30.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8.28.) ※ 단, △거주증 소지자, △학생·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입국 전 3일 이내에 페루 이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 입국 후 의무 격리(자가, 호텔 등) 실시
159	**폴리네시아**	▸항공기 탑승 수속 전,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전자여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프랑스령)	행정보시스템(ETIS)상 등록영수증 또는 확인번호를 제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받아 4일 후 검사
160	피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국경 봉쇄(5.4.) ※ 단,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입국가능 (방안 1) 의료기관이 피지 입국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의료 증명서(호주·뉴질랜드에서 14일간 격리, 코로나19 음성확인)지참시, 관광객들은 특별 지정 경로에 따라 목적지로 즉시 이동 (방안 2) 피지정부 지정 격리시설 중 선택하여 자부담으로 14일간 격리 후, 코로나19 진단테스트가 음성일 경우, 관광 가능 - 특별 지정경로에 따라 난디 공항에서 지정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정 호텔·리조트로 즉시 이동 후 동 시설에서만 이동 가능 ※ 호주·뉴질랜드에 있는 피지 국민·영주권자·비자소지자 대상 △48시간 이내 발급한 의료증명서(호주·뉴질랜드에서 14일간 격리, 코로나19 음성확인)를 소지하거나, △입국적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서 지참시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
161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8.1.부터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허용(7.17.) - 필리핀 이민법 제13조에 규정된 이민비자(immigrant visa, 영주권)만 해당하며, 은퇴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입국 금지 - 입국 전 필리핀 당국이 지정한 격리시설(호텔 등) 및 코로나19 검사 업체 예약 필요 ※ 1일 입국가능 인원수를 제한하여 항공사별로 입국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항공권 예약 시 주의 필요 ▸5.3. 08:00부터 5.10. 07:59까지 필리핀 내 국제공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5.3)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5.6) -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리 시설에 격리됨. (음성 결과) 시설 격리는 해제,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 결과)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 *△WHO 최신 보고서에 따라 고위험 지역 또는 지역 감염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온 자로서 방역관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 -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 *엄격 격리 대상자 외 모두 의무 격리 대상자 ▸ (Luzon 섬)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162	헝가리	▸9.1.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영주권, 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입국 신청 가능(입국 심사 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 외교, 공무 목적 입국 가능 ※ 쉥겐협약을 따르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경유 가능(단, 헝가리 내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63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164	홍콩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는 가능 -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 홍콩을 경유한 중국 출입국 및 자가환승은 불가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을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 입국 후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4.17.) ※ 해외입경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 4.22.부터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정병원 이송,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후 12일째 되는 날 코로나 19 재검사(4.21.)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24개 국가·지역

※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유럽	▸그리스(7.1.)①, 네덜란드(7.1.)②, 라트비아(7.1.), 루마니아(8.5), 룩셈부르크(7.1.)③, 리히텐슈타인(7.20.), 몬테네그로(5.30.), 몰타(7.11.), 벨라루스(6.25.), 북마케도니아(6.26.), 불가리아(7.16.), 사이프러스(4.20.)④, 세르비아(5.22.)⑤, 스위스(7.20.)⑥, 슬로바키아(7.6.), 알바니아(7.1.)⑦, 에스토니아(7.6.), 체코(7.13.), 폴란드(7.3.)⑧, 키르기스스탄(8.20.)⑨, 터키(6.11.), 포르투갈(7.1.), 프랑스(7.3.), 핀란드(7.27.)

① 그리스 : 그리스 정부 홈페이지(http://travel./gov.gr/#/)에서 입국 24시간 전 △출발 국가, △최근 14일간 방문한 국가, △그리스 내 체류지 등에 대해 온라인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제출(승객위치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메일로 QR 코드 수신, 검역 요원이 QR 코드 확인)

② 네덜란드 : 자가격리 비권고 그룹(경유 승객, 외교관, 긴급한 방문 등), 자가격리 강력 권고 그룹(장기거주 비자소지자, 학생 등)으로 분류

③ 룩셈부르크 : 단, 거주증명 필요

④ 사이프러스 : 사이프러스 정부 홈페이지(www.cyprusflightpass.gov.cy)에서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승객위치질문서 등 제출 필수(승객위치질문서 제출 시 입국여부 확인 가능)
- 사이프러스 북부는 터키 점령지역으로, 사이프러스 정부는 제3국민의 니코시아(수도) 경유 북부 지역 이동 불허

⑤ 세르비아 : 주변 4개국(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⑥ 스위스 : 위험국가 출발 여행객은 비위험국가를 경유하더라도 10일간 격리(단, 경유 시 환승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 자가격리 불요)

⑦ 알바니아 : 단, 그리스는 알바니아에 대한 항공, 해상, 육로 이동을 전면 제한함. 출국전 항공사별로 별도 요구사항 확인 필요

⑧ 폴란드 : 비필수적 목적(관광 등) 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방문 목적을 증빙할 문서 소지 권고

⑨ 키르기스스탄: PCR검사 결과는 불요하나 지참 시 유리하며, 14일 의무 격리조치는 없으나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격리 조치 가능